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59
----------	-------

발의연월일 : 2023. 7. 20.

발의자 : 권성동 · 지성호 · 유경준
서병수 · 박성민 · 권명호
박진 · 엄태영 · 임병현
조은희 · 이달곤 · 백종현
박정하 · 한무경 · 안병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 재난 등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 · 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인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

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4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경찰공무원의 배치)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u>제4조의4(경찰공무원의 배치) 제</u> <u>4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u> <u>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119종합</u> <u>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u> <u>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u> <u>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u> <u>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u>